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3-006-050호

**안 건 명**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연 월 일 2023. 4. 12.

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6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.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사업자 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('22. 9. 5. ~ 11. 30.)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1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현황

피심인은 공지사항 알림,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, '22. 10. 31.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다.

개인정보 파일 (시스템)	수집·이용 항목	목적	수집 방법	수집일	보유 기간	보유건수

# 나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# 1) 유출규모 및 항목

- (유출규모) 회원에 가입한 교사 등 1,070명의 회원정보
- (유출항목) 성명, 휴대전화번호, 학년·반·출석번호, 직원·교원·강사 여부

## 2) 유출경위

졸업생(민○○)이 개인계정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이○○ 교사 이름으로 피심인 운영관리자에게 교직원의 접근권한을 요청하였고, 그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정보(교사, 학부모, 학생)를 조회하고, 3회에 걸쳐 시스템에서 문자를 발송하였다.

# 3) 유출경과 및 대응

일시	피심인의 유출인지·대응 내용
'22. 3. 7. 10:29	졸업생(민○○)이 개인계정으로 시스템 로그인 후 이○○ 교사의 이름으로 운 영관리자에게 교직원 권한 요청
'22. 3. 7. <b>1</b> 4:03	운영관리자는 확인 없이 교직원 권한을 승인
'22. 3. 7. 14:30 ~ 3.10 08:51	졸업생(민☆☆), 학생 회원정보 조회 및 문자 작성·발송
'22. 3.10. 08:19	학부모들의 제보로 유출사실 인지
'22. 3.11. 11:00	교직원 권한요청 방식 개선
'22. 3.11. 22:16	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(문자)
'22. 3.12.	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유출사실 게재

# 다. 기초 사실

## 1)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운영관리자 및 교사 권한으로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.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. 2. 6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3. 2. 24.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'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', '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제4호)'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이하 '고시') 제6조제2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으며,

고시 제8조제2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#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이 운영관리자 및 교사 권한으로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29조, 시행령 제30조제1항,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시행령 제30조제1항, 고시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
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(접근통제)	보호법 §29	§30①	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 용하지 않은 행위(고시§6②)	
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(접속기록)	보호법 §29	§30①	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(고시§8②)	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 부과 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 가. 기준금액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.

		과태료 금액(만원)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 제1항 또는 <b>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</b>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(과태료의 가중)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 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[별표2]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(과태료 가중) [별표2]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%인 60만원을 가중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>

기준	가중사유	가중비율
위반의	<ol> <li>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ol>	기준금액의 50% 이내
정도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 하는 경우	기준금액의 30% 이내

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[별표1]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	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	기준금액의
협조·	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50% 이내
자진	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	기준금액의
시정 등	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40% 이내

<sup>※</sup>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기준)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%을 초과할 수 없음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
위반조항	위반내용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
법 §29	안전조치 의무 위반	600	60	300	360

파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4월 12일

위 원 장	고 학 수	(서 명)
-------	-------	-------